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주)팜투팜2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주)피비에이치 (충청남도 천안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기타가공품)	우유, 대두	2027.07.19. 2027.07.21. 2027.07.29. 2027.08.05.	20g (2g*10포)	3,165kg (158,231개)	충청남도 천안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홍태 (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 (043-719-2055)
협조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1-521-2350)
		담당자	팀 장	전정진 (041-521-2352)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 제조업체(소재지): (주)팜투팜2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 (주)피비에이치 (충청남도 천안시) • 내용량: 20g(2g*10포) • 소비기한: 2027.07.19. 2027.07.21. 2027.07.29. 2027.08.05. 	 <p>식품유형 기타가공품 품목보고번호 20180037041115 내용량 2 g x 10포 (20 g) 포장재질(내면) 폴리에틸렌(PE) 섭취방법 1일 1~2회, 1회 1포(2 g)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원재료명 브로멜라인(파인애플농축분말(파인애플농축액(파인애플 주스농축액/필리핀산 고형분 20%),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말토덱스트린] 25%, 옥수수수염추출분말[옥수수수염추출액(옥수수수염/국산 고형분 2%), 덱스트린] 25%, 백봉령추출분말[백봉령추출액(백봉령/중국산 고형분 0.3%), 덱스트린] 25%,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함유), DL-사과산, 파인애플맛분말[설탕, 무수결정포도당, 식물성크림, 파인애플농축분말, 향료(파인애플향분말), 구연산,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호박추출분말[농은호박추출액(농은호박/국산 고형분 3%),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포도씨추출분말, 구연산칼륨, 밀크씨슬분말, 비타민C,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이인산칼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C, 니코틴산아미드, 젯산칼륨, 비타민D3혼합제(아라비아검, 비타민D3, 판유, 아산화규소, 옥수수전분, 설탕, 비타민D),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2혼합제(덱스트린, 구연산, 구연산삼나트륨, 비타민B12), 비타민A혼합제(옥수수전분, 아라비아검, 포도당시럽분말, 비타민E, 비타민A아세테이트), 비타민D혼합제(아산화규소, 포도당시럽분말, 변성전분, 디알-알파-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엽산, 산화아연], 퀘르세틴 포스포리피드 에스테르/염기[회화나무열매추출물, 레시틴(해바라기), 말토덱스트린, 아산화규소], 이노시톨</p> <p>* 본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쇠고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p>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